

2026년도 온라인 한국식품관 수요조사

□ aT 해외지사(바이어 연계) 추진 온라인 한국식품관 세부추진계획

구분	온라인 한국식품관	비고
11개소 내외 (비상설 기획전)	○ 중국(징둥, 징둥마트), 일본(큐텐), 대만(모모), 영국(오카도)	5개소 (기 개설)
	○ 대만(PC HOME), 인도네시아(쇼피), 말레이시아(그랩), UAE(인스타샵), 러시아(오존, 와일드베리스)	6개소 (신설)

- 사업관할/추진 : aT 본사(소비자사업부) / aT 해외지사
- 사업기간 : '26년 1월 ~ 12월
- 사업규모 : 11개소 내외 *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- 사업내용 :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현지 바이어와 연계하여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(기획전) 개설 및 운영
-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지원대상	지원비율
공동 마케팅	○ 운영지원 : 한국식품관 개설 수수료, 배너·메뉴 개설 비용 등 ○ 마케팅 : 온라인 한국식품관 판촉, 온라인물 내·외부 홍보 등	국산 농식품 수출·제조기업제품 (대·중견·중소기업)	80% * 해외 플랫폼 또는 해외 바이어에 정산

* 상기 공동마케팅 정산 기준은 <참고 2> 참조

- 해외지사 제출 추진계획 선정 및 예산 배정 방법
 - 비계량평가(100점) 합산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 선정
 - 권역별 규모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계획 별 예산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해외지사와 협의하여 일부 예산 배정 차등 가능
 - 평가위원 구성 : 농식품부 등 내부사업 관련 담당 4인 이내로 구성
 - 평가항목(비계량 100%)

평가항목	배점	평가내용	배점				
행사기획	25	○ 한국식품관 개설 및 운영 방향	수	우	미	양	가
		○ 행사 기획 전반의 적정성	25	23	21	19	17
행사매장	30	○ 한국식품관 개설 매장의 적정성	수	우	미	양	가
		○ 국가 내 매장 인지도 등	30	27	24	21	18
행사품목	25	○ 품목 구성의 다양성	수	우	미	양	가
		○ 신규품목 입점 계획	25	23	21	19	17
행사홍보	20	○ 현지 트렌드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홍보 수단 활용	수	우	미	양	가
			20	18	16	14	12

붙임 1 온라인 한국식품관 수요제출 양식

□ 사업목적

- 휴먼명조 15 [줄간 엔터 글자크기 8pt]
 - 휴먼명조 15 [줄간 엔터 글자크기 8pt]
 - * 맑은 고딕 12 [줄간 엔터 글자크기 4pt]

□ 추진계획(모든항목 필수 기입)

- 온라인 한국식품관 형태 : 점포 / 기획전
- 행사 개요
 - 개최 시기 : 2026.00.00~2026.00.00(00일간)
 - * 개최 시기 관련 특이사항 : 현지 주요 소비시즌 연계, 수출제품 출하시기 연계 등
 - 전자상거래 플랫폼 :
 - * 플랫폼 관련 특이사항 : 플랫폼 소개, 현지 시장점유율, MOU 체결, 인기품목 등
 - 연계업체(바이어)명 : (플랫폼 직접 연계 시 “직접 연계” 기입)
- 주요 품목

품목	중소기업	제조사명	판매(예정)개수
꿀유자차	○	고려자연식품	300
홍삼고	○	금산물	200
라면류	-	농심, 오뚜기 등	500
합계			1,000
중소기업 제품 비중(%)			50.0%

* 중소기업여부 확인 : NICE 기업정보(<https://www.nicebizinfo.com/cm/CM0100M001GE.nice>)

○ 마케팅 추진 방법

- 휴먼명조 15 [줄간 엔터 글자크기 8pt]

* 맑은 고딕 12 [줄간 엔터 글자크기 4pt]

- 휴먼명조 15 [줄간 엔터 글자크기 8pt]

* 맑은 고딕 12 [줄간 엔터 글자크기 4pt]

□ 기대효과

○ 휴먼명조 15 [줄간 엔터 글자크기 8pt]

- 휴먼명조 15 [줄간 엔터 글자크기 8pt]

* 맑은 고딕 12 [줄간 엔터 글자크기 4pt]

□ 소요예산 : 00백만원

- 지원비율 : (바이어 연계) 80% / (플랫폼 직접 연계) 100%

구 분		소 요 예 산	
		금액(천원)	산 출 근 기
사업비	홍보비	80,000	- 배너 제작 홍보 : - SNS 홍보 :
	마케팅비	20,000	- 포인트 : - 쿠폰 : - 배송료 : - 증정품 : - 샘플 :
	집행액(A)	100,000	
	정산액(B)	80,000	* B = A x 지원비율
	지사 운영비(C)	1,500	*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2% 한도
합 계(B+C)		81,500	

* 마케팅비 :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20% 한도

<별첨.1> 온라인 한국식품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요

업 체 명		대 표 자	
홈페이지			
주 소			
설 립 일		종업원수	
매 출 액 (2025)			
담 당 자		담 당 자 e-mail	
담당자 전 화		FAX	
한국식품 취급현황	☐ 취급실적(2025) : ☐ 취급품목 :		
특기사항			

<별첨.2> 온라인 홍보판촉 수입업체 개요 (※ 플랫폼 직접 연계는 작성 불필요)

업 체 명		대 표 자	
홈페이지			
주 소			
설 립 일		종업원수	
매 출 액 (2025)			
담 당 자		담 당 자 e-mail	
담당자 전 화		FAX	
한국식품 취급현황	☐ 취급실적(2025) : ☐ 취급품목 :		
특기사항			

참고 1 (준)정부기관 설립 온라인 한국식품관 온라인 판촉 정산 기준

□ 공통기준

- 이하 정산기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등 (준)정부기관 명의로 설립한 해외 소비자 대상 한국산 식품 전용 판매 온라인몰에 한함
 - * 중견·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목표로 (준)정부기관 명의로 설립한 온라인 한국식품관 활성화를 위해, 온라인판촉 지원항목 중 마케팅비 한도를 전체 배정 승인 예산의 60%(사업의무액 500% 이상 달성시 최대 80%)까지 확대
- 모든 사업비용은 해외 온라인 판촉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에 한함
-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aT와 협의 필요
 - * aT는 필요시 대금 입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- * 각국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 제출이 원칙이며,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 증빙 첨부 불가 시 사전 aT와 협의 필요

□ 지원 세부 기준

지원항목	세부내역	제출서류
홍보비	○ 온라인 매장 내 홍보(사이트 배너, 슬라이딩 등) 관련 제작 및 홍보비용 ○ 행사 관련 매체광고비, SNS 활용 광고비 등 *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홍보비 정산 가능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(또는 영수증) 등 관련 지출 증빙 ○ 온라인 매장 내 상품 사진(캡처화면) ○ 온라인 매장 내 홍보 현황 사진(캡처화면) ○ 행사 관련 매체광고 내역 등 행사사진(캡처화면) * 온라인 매장 관련 모든 증빙은 온라인 매장에서 발급한 증빙 제출이 원칙
마케팅비	○ 증정품 + 경품 + 포인트 + 쿠폰 + 배송료 합산 금액 /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60% 한도 * 단, 사업의무액 500% 이상 달성시 최대 80%까지 인정 *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마케팅비 정산 가능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(또는 영수증) 등 관련 증빙 ○ 제작실물 또는 실물사진 ○ 증정품 관리대장(수량명시), 사진 첨부 * 경품행사 진행시,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○ 포인트,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증빙 * 온라인 매장 관련 모든 증빙은 온라인 매장에서 발급한 증빙 제출이 원칙
인증비	○ 국가별 입점 시 필수 취득 인증(검역포함) 비용 * 예) 일본 수출통관 시 후생성 검역(인증) 비용 등	○ 인증 취득 증빙 및 관련 지출 증빙

- * 지원항목 세부기준은 판촉행사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사전에 aT와 협의 필요
- * 영수증의 수신자가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기

□ 지원금액

- 정산결과 통보문에 명시된 금액을 최종지원액으로 하며, 지원세부기준에 따라 정산 승인한 실 집행비용의 80% 지원 원칙
 - * 단, 수출전략품목이 전체품목(수량)의 50%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이 전체품목(수량)의 100%인 경우, 배정예산 한도 정산승인액의 90% 지원[수출전략품목 : 수출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에서 지정한 수출 국가 별 전략품목]
 - * 대기업(공시대상기업집단, <참고 10> 참조) 상품만으로 구성된 온라인 판촉은 배정 예산 한도 정산승인액의 50%만 지원
- 단, 사업의무액을 미달성할 경우,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 지원액 감액

※ 최종지원액 = [정산 승인액(①×②) ×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(③)]

☞ (① 판촉사업 수행업체 실 집행비용 × ② 지원 비율) × ③ 사업의무액 달성 비율(%)

· 정산 승인액(①×②)은 당초 배정된 국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판촉사업 수행업체 실 집행비용은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aT가 최종 승인한 집행비용을 의미

* 사업의무액 달성비율(%)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(예 80.488%→80.48)

□ 지원 한도 및 사업의무액 달성 여부에 따른 최종지원액 적용예시

[사업의무액 달성시] 정산승인액 ≥ 배정예산		[사업의무액 미달성시] 정산승인액 ≥ 배정예산	
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	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
실집행금액 6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120%	실집행금액 6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70%
= (60 * 0.8 =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) →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% 적용 = 30백만원 * 1.0 = 최종지원액 30백만원		= (60 * 0.8 = 48백만원 지원한도 30백만원 적용) → 달성 비율 70% 적용 = 30백만원 * 0.7 = 최종지원액 21백만원	
[사업의무액 달성시] 정산승인액 < 배정예산		[사업의무액 미달성시] 정산승인액 < 배정예산	
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	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
실집행금액 2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200%	실집행금액 2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30%
= (20 * 0.8 =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) →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% 적용 = 16백만원 * 1.0 = 최종지원액 16백만원		= (20 * 0.8 = 16백만원 정산지급액 16백만원 적용) → 달성 비율 30% 적용 = 16백만원 * 0.3 = 최종지원액 4.8백만원	

□ 사업 의무액

- 행사 기간 한정 매출실적의 합이 배정예산의 100%(1배) 이상
 - (증빙서류) 매출액, 품목수, 판매건수 등이 포함된 온라인몰 관리자 시스템 내 캡처 화면 제출

□ 적용 환율

- 정산 요청(사업자 → aT) 환율
 - 온라인 해외 판촉 행사기간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 (보낼 때) 평균환율 적용
- 정산 송금(aT → 사업자) 환율
 - 원화 외 송금 시, 송금 당일 aT 주거래은행(농협은행) 해외송금 환율 적용

□ 계획 · 결과 · 정산 보고

- 행사계획 보고 : <참고 5> 사용하여 행사계획 14일 전 제출
 - * 온라인 판촉행사 연계 증정품·경품행사 지급 시, <참고 5>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'증정품·경품행사 운영계획(안)'을 '행사계획서'와 함께 제출 필요
-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: <참고 6> 양식 사용하여 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
 - * 온라인 판촉행사 연계 증정품·경품행사 지급 시, <참고 6>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'증정품·경품 관리대장'을 '정산보고서'와 함께 제출 필요

□ 기타 유의사항

- 행사계획 보고 이후 행사 내용(행사 기간, 행사 품목, 광고 방법 등) 변동 발생 시, 행사 추진 전 변경사항을 aT에 사전 서면 보고 및 aT 승인을 받으면 행사 내용 변경하여 추진 가능
 - * 행사 내용 및 기간은 현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(단, 변동 시 계획 재보고 필요)
- 행사국가, 행사매장, 품목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,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꼭 받아야 함

참고 2 해외지사 추진 온라인 한국식품관 온라인 판촉 정산기준

- ※ 별도 정산기준이 있는 온라인 한국식품관은 해당 정산기준을 따름
- ※ 대행용역계약(플랫폼 직접 연계 추진이나 해외지사가 용역업체와 대행운영계약)으로 한국식품관 운영 시, 사업예산(지원한도) 내 대행용역계약금의 100% 지원. 단, 대행용역계약 시 사업의무액(매출 혹은 수출입 실적) 명시해야하며, 사업의무액은 아래 내용을 준수

1. 지원한도 및 사업의무액

□ 판촉 유형별 지원한도

구 분	지원한도
온라인몰 직접연계	배정예산 한도 정산승인액*의 100% 지원
수입업체 주관	배정예산 한도 정산승인액의 80% 지원 (단, 수출전략품목**이 전체품목(수량)의 50%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이 전체품목(수량)의 100%인 경우, 배정예산 한도 정산승인액의 90% 지원)

* 정산승인액 = 판촉사업 수행업체의 실집행비용 중 aT지원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승인된 집행비용

** 수출전략품목 : 수출전략품목육성지원사업에서 지정한 수출 국가 별 전략품목

- 단, 대기업(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, [참고 10] 참조) 제품 단독 판촉은 배정예산 한도 정산 승인액의 50% 지원
- 사업의무액 미달성 시, 의무액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액 조정

$$\text{정산액} = \text{①[정산승인액} \times \text{지원비율(\%)]} \times \text{②사업의무액 달성비율(\%)}$$

* ①은 선정결과 통보에 명시된 지원한도(=배정예산)를 초과할 수 없음

** ②사업의무액 달성비율(%)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

*** ②사업의무액 달성비율(%)은 매출액, 수입액 중 높은 비율 적용

□ 사업의무액

○ 온라인몰 직접연계

- 행사기간 한정 매출실적의 합이 배정예산의 100%(1배) 이상
- (증빙서류) 상품명, 개수, 단가,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서류

* 현지 온라인몰 정책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본사 사전협의 필요

- 수입업체 주관(또는 용역업체 대행운영계약을 통한 해외지사 주관)
 - 매출실적 혹은 수출입실적 중 실적이 높은 증빙으로 제출가능하나, 사업실적 집계를 위해 사업의무액과 관계없이 매출증빙 제출 필수
 - * (매출실적) 행사기간 한정 매출실적의 합이 배정예산의 100%(1배) 이상
 - * (수출입실적) 수출입실적의 합이 배정예산의 2배(신선) · 3배(가공) 이상
 - * 온라인 한국식품관 매출증빙 제출방법은 [참고 1,2] 참조

○ 사업의무액 감면

- 신규 검역해소 품목의 경우 사업의무액 50% 경감
- 미활성국가(시장다변화 전략국가) 사업의무액은 50%로 감액
 - * (매출실적) 행사기간 한정 매출실적의 합이 배정예산의 50%(0.5배) 이상
 - * (수출입실적) 수출입실적의 합이 배정예산의 100%(1배) 이상

· 시장다변화 전략국가('25년, aT 관할 성장국가 15개국) : 사우디, 멕시코, 쿠웨이트, 튀르키예, 인도, 싱가포르, 카자흐스탄, 필리핀, 몽골, 대만, 호주, 네덜란드, 영국, 폴란드, 캐나다

- 수출입실적 인정기간(연내 수출입신고 완료 필요)

- * (수입실적) 행사기간 전후 30일 + 행사기간
- * (수출실적) 국가별 운송기간 + 행사기간 전후 30일 + 행사기간

· 국가별 운송기간

구분	일본	중화권/동남아	미주	유럽 및 기타
적용기간	7일	15일	30일	40일

*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운송 지연시에는 선적일 ~ 통관일까지를 운송기간으로 인정

- 수출입실적 증빙서류

구분	제출 증빙서류
매출실적	○ 온라인몰 및 O2O 매장 발행 매출증빙(행사기간 한정) - 상품명, 개수, 단가, 총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증빙서류 * 현지 온라인몰 정책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aT 본사 사전협의 필요
수입실적	○ 수입신고필증(CIF 기준) -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나 인보이스 제출시 B/L첨부(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) ○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(계약서 등) 및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(신선 2배 · 가공 3배) 동시 제출시 인정
수출실적	○ 수출신고필증(FOB 기준) 제출 - 구매자에 바이어 명시 필수

- * 온라인 홍보판촉 행사기간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(보낼 때) 평균환율 적용
- * 모든 증빙 및 제출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

□ 지원 한도 및 사업의무액 달성 여부에 따른 최종지원액 적용예시

[사업의무액 달성시] 정산승인액 ≥ 배정예산		[사업의무액 미달성시] 정산승인액 ≥ 배정예산	
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	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
실집행금액 6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120%	실집행금액 6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70%
$= (60 * 0.8 = 48\text{백만원 지원한도 } \mathbf{30\text{백만원}} \text{ 적용})$ →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% 적용 $= 30\text{백만원} * 1.0 = \mathbf{\text{최종지원액 } 30\text{백만원}}$		$= (60 * 0.8 = 48\text{백만원 지원한도 } \mathbf{30\text{백만원}} \text{ 적용})$ → 달성 비율 70% 적용 $= 30\text{백만원} * 0.7 = \mathbf{\text{최종지원액 } 21\text{백만원}}$	
[사업의무액 달성시] 정산승인액 < 배정예산		[사업의무액 미달성시] 정산승인액 < 배정예산	
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	배정예산 30백만원	지원 비율 80%
실집행금액 2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200%	실집행금액 20백만원	사업의무액 달성 30%
$= (20 * 0.8 = 16\text{백만원 정산지급액 } \mathbf{16\text{백만원}} \text{ 적용})$ → 초과 달성이므로 달성 비율 100% 적용 $= 16\text{백만원} * 1.0 = \mathbf{\text{최종지원액 } 16\text{백만원}}$		$= (20 * 0.8 = 16\text{백만원 정산지급액 } \mathbf{16\text{백만원}} \text{ 적용})$ → 달성 비율 30% 적용 $= 16\text{백만원} * 0.3 = \mathbf{\text{최종지원액 } 4.8\text{백만원}}$	

2. 지원내용 및 정산기준

□ 지원내용 : 온라인판촉 및 O2O 매장 연계 판촉 관련 홍보·마케팅 비용

구 분	지원항목
온 라 인	- (홍보) 행사관련 해당 사이트 배너, 슬라이딩 등 제작 및 홍보비용 - (광고) SNS, youtube, 홈쇼핑 등 행사관련 매체광고비 등 - (마케팅) 포인트, 쿠폰, 배송료, 증정품, 샘플 및 인터넷 이벤트 등 *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홍보·광고·마케팅 정산 가능

□ 정산기준

○ 공통기준

- 모든 사업비용은 해외 온라인 판촉 행사 관련 실집행비용에 한함
- *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홍보·광고·마케팅도 정산 가능
-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본사와 사전 협의 필요
- * 본사는 필요시 대금입금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* 해당국가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 제출이 원칙이며, 부득이한 상황으로 확정증빙 첨부 불가 시 본사에 사전 협의 필요

- 정산 시 행사를 주관했던 수입 · 유통업체로 직접 송금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 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처리
- 해외지사 요청시, 현지화 정산 가능하나 기 배정된 지원한도(원화) 초과 불가
- 모든 홍보물 제작 시, K-Food 로고 부착 의무(불가 시 본사협의)

○ 지원 세부기준

지원항목	세부내역	제출서류
홍보비	○ 온라인 매장 내 홍보(사이트 배너, 슬라이딩 등) 관련 제작 및 홍보비용 * 온라인 매장에서 발급된 증빙을 원칙으로 함 ○ 행사 관련 매체광고비, SNS 활용 광고비 등 *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홍보비 정산 가능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지출증빙 ○ 온라인 매장 내 제품 사진(캡처화면) ○ 온라인 매장 내 홍보 현황 사진(캡처화면) ○ 행사 관련 매체광고 내역 등 행사사진(캡처화면) ※ 모든 증빙은 온라인매장에서 발급된 증빙을 원칙으로 함
마케팅비	○ 증정품 + 경품 + 포인트+쿠폰 + 배송료 합산 금액 /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25% 한도 *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마케팅비 정산 가능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증빙 ○ 제작실물 또는 실물사진 ○ 증정품 관리대장(수량명시), 사진 첨부 * 경품행사 진행시,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○ 포인트,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 증빙

- * 항목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본사와 사전 협의 필요
- * 모든 증빙 및 제출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표기 후 제출

3. 지원 관련 주의사항

□ 적용 환율

- 정산 요청(사업자 → aT) 환율
 - 온라인 해외 판촉 행사기간 동안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 (보낼 때) 평균환율 적용
- 정산 송금(aT → 사업자) 환율
 - 원화 외 송금 시, 송금 당일 aT 주거래은행(농협은행) 해외송금 환율 적용

□ 계획 · 결과 · 정산 보고

- 행사계획 보고 : <참고 5> 양식 사용하여 행사계획 14일 전 제출
 - * 온라인 판촉행사 연계 증정품·경품행사 지급 시, <참고 5>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'증정품·경품행사 운영계획(안)'을 '행사계획서'와 함께 제출 필요
-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: <참고 6> 양식 사용하여 행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
 - * 온라인 판촉행사 연계 증정품·경품행사 지급 시, <참고 6>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'증정품·경품 관리대장'을 '정산보고서'와 함께 제출 필요

□ 기타 유의사항

- 행사계획 보고 이후 행사 내용(행사 기간, 행사 품목, 광고 방법 등) 변동 발생 시, 행사 추진 전 변경사항을 aT에 사전 서면 보고 및 aT 승인을 받으면 행사 내용 변경하여 추진 가능
 - * 행사 내용 및 기간은 현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(단, 변동 시 계획 재보고 필요)
- 행사국가, 행사매장, 품목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,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꼭 받아야 함